

# 학점포기제도 운영지침

**제1조** (정의) 이 지침은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말한다.

**제2조** (학점포기 대상과목) 학점포기 대상과목은 “D”이하 성적 취득 과목 중 교과과정 개편·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지된 이수과목으로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으로 한다. 단,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,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해당되지 않는다. <개정 2012.11.8., 2015.2.23>

**제3조** (신청자격) 신청자격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, 성적을 포기 신청할 수 있다. 단,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한다.

**제4조** (포기한도) 학점포기한도는 최대 6점까지 허용한다.<개정 2012. 11. 8.>

**제5조** (신청절차 및 방법) ① 학점포기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정해진 학점포기 신청 기간에 학점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.

② 소속 학과사무실에서는 학점포기신청서를 취합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 교무처로 제출한다.

③ 교무처에서는 총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포기과목을 일괄 처리한다.

**제6조** (기타) ① 학점 포기로 인하여 성적이 변경되었더라도 장학생 선발 등은 학점 포기 이전의 성적으로 선정한다.

② 학점포기가 승인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
③ 필수 교과목의 경우, 학점포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추후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전에는 졸업할 수 없다.

④ 학점포기과목은 성적기록부에는 기록을 남기고, 성적증명서 발행 시에는 삭제 처리되며, 성적 평균평점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 )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지침의 개·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 )이 개정지침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 )이 개정지침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